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22호
2026. 4. 24.(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6-31호) 1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고시 제2026-32호) 2

공 고(2)

- 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공고 제2026-504호) 3
-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6-510호) 12

공 략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대동 420-1	아리랑로55번길 166	건물신축	아리랑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5 5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 도로	2026. 4. 24.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아리랑로55번길 166	신대동 420-1	2026. 4. 21.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32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484	421647.51	239875.96	421617.83	239898.74	세계좌표(재설치)
도근점	2485	421478.46	239978.50	421482.49	239983.22	세계좌표(재설치)
도근점	2486	421378.03	240031.47	421376.54	240035.34	세계좌표(재설치)
도근점	2487	421320.94	240095.35	421320.93	240097.08	세계좌표(재설치)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덕구 장동 일원				
측 량 연 월 일		2026년 4월 8일 (2484, 2485, 2486, 2487)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				

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원 목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 (내진성능 확보)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2. 지원 대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위치한 민간 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함.

※ 공공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3. 지원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4.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및 범위 등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100%, 인증수수료의 100%)

- 인증 지원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비에 대한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범위·비율·한도 등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최대 지원 한도 금액	비고
계		40,000천원	
내진성능평가비	100%	3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인증수수료	100%	10,000천원	국비 60%, 시비 20%, 시군비 20%

【 지원 한도금액 산출 근거】

-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30,000천원×지원비율 1.0 = **30,000천원**
-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10,000천원×지원비율 1.0 = **10,000천원**

5.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기간, 제출 장소 등

○ 제출 기간 : 2026. 4. 24.(금) ~ 2026. 5. 15.(금) (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6.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지원 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6.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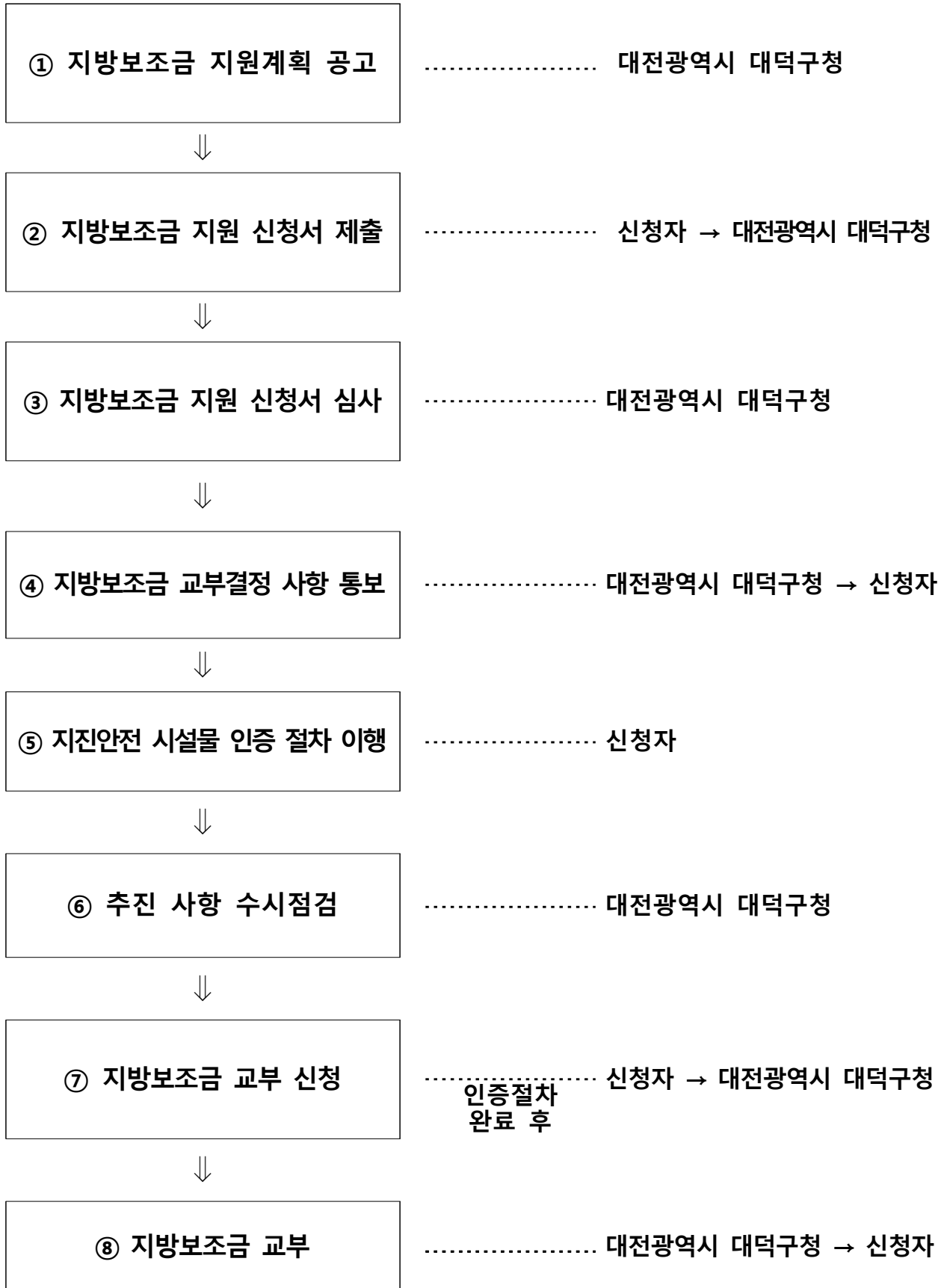
7.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총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를 받은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완료 한 후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통보한 후에 관련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자부담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지원절차



8. 기타 유의 사항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산정시 유의 사항

- 1)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원 신청비용은 행정안전부의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내진보강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www.scsr.co.kr>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밀안전진단 시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여야만 인증신청이 가능

- 3)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비용 산정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로 하며,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음.

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042-608-5354) 문의.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추후 사업(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1부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 대상 건축물 개요

가. 건축물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

구 분	내 용	
건축물 명칭		
소 재 지	(새주소)	
소유자 등	성 명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기재
	주 소	※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주소 또는 단체주소를 기재

☞ 소유자 등(법인, 단체 포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나.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층수(지상/지하)	건축 면적(m ²)	건축 연면적(m ²)

☞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

다. 건축물의 허가일 및 준공일, 내진설계 적용 여부

허 가 일	준 공 일	내진설계 여부*	
		적 용	미적용
년 월 일	년 월 일		

☞ 내진설계 적용여부* : 해당란에 “○” 를 표기

2. 추진계획

가. 소요 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6년 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기재

나. 내진성능평가 추진사항 및 계획

구 분	용역 기간	용역금액 (천원)	용역업체	평가결과* (O, X)	
				성능확보	미확보
용역완료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중	년 월 일 ~ 년 월 일				
용역 예정	년 월 ~ 년 월	※예정금액 기재	※기재생략 가능		

☞ (확인사항) 내진성능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가 소속된 정밀안전진단업체,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21.6.10.)에 따라, 인증 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평가서들 ‘ 건축구조기술사 ‘ 직인이 필요하므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업체가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수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

추진계획	인증수수료*(천원)
2026년 월 ~ 2026년 월	※ 납부 예정금액 기재

☞ 인증수수료*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별표3)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

3. 지방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구분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금액 (천원)
계			
내진성능 평가비			
인증수수료			

☞ 작성요령

1) 내진성능 평가비

①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소요금액의 100% / 자부담 : 없음

② 내진성능평가비 소요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지원한도 금액 30,000천원 / 자부담 : 지원한도 금액 초과분

2) 인증수수료

①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소요금액의 100% / 자부담 : 없음

② 인증수수료가 1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 보조금 신청금액 : 지원한도금액 10,000천원 / 자부담 : 지원한도 초과분

별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1부. 끝.

2026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함

4. 설치장소: 방범용(14개소 / 28대) 【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2026. 4. 24. ~ 2026. 5. 13.(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5. 13.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미디어홍보과(☎ 042-608-6092 fax 042-608-3939)

【첨부1】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연번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계	14개소 28대	14	11	17	
1	대덕대로1520번길 (목상동 13-21)	1	1	1	
2	송촌동573	1		4	
3	대전로1364번길	1	1	3	
4	한남로113번길 54 (오정동 735)	1	1		
5	와동394	1	1		
6	벚꽃길133 (상서동 148)	1	1		
7	방두말1길 20-43 (상서동 157)	1	1		
8	한밭대로1111번길 100 (중리동 393-1)	1	1		
9	신탄진로232번길 34 (와동 59-6)	1		2	
10	아리랑로197번길 7-17 (법동 415)	1	1		
11	남경마을로33번길 (신탄진동 264-128)	1	1		
12	대청로 65 (신탄진동 52-1)	1		4	
13	덕암로188번길 48 (평촌동 534-4)	1	1	1	
14	덕암로 167번길 (덕암동 64-11)	1	1	2	

